

## < 층간소음 주민협약 세부운영 지침(안) >

1. (1차 민원신청)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수칙(이하 수칙)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는 전화, 방문, 메일 등의 방법으로 주민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2. (현장확인) 조정이 신청되면 민원에 대하여는 층간소음 주민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에서는 7일내에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3. (조정회의 개최)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발생자, 조정위원이 참여하는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해결방안을 검토한다.
4. (1차 시정권고) 현장확인 결과 수칙 위반이 판명되고 조정회의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음원 발생자에게 주민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 명의로 1차 시정권고를 한다.
  -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5. (2차 민원신청) 1차 시정권고를 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피해주민은 2차로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6. (주민조정위원회 개최) 2차 조정신청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한다.
7. (2차 시정권고) 위원회는 회의 결과에 따라 벌칙이 포함된 부칙내용을 담아 위원장 명의로 2차 시정권고를 한다.
8. (공 표) 2차 시정권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차 시정권고와 더불어 시정권고 내용을 주민게시판에 공표할 수 있다.
9.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안내) 벌칙을 부과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은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안내한다.

### 부 칙

층간소음 주민조정위원회에서 부여할 수 있는 벌칙 등은 다음과 같다

- 가. 벌과금은 5만원이내에서 결정 한다
- 나. 경고문에 들어가야 할 내용
  - 1) 1차 및 2차에 걸친 주요 조사내용
  - 2) 소음 발생자가 준수하지 않은 내용
  - 3) 주민조정위원회 최종 결론(서명)
  - 4) 벌과금 등 통지예정 알림글 등